**1. 신용정보활용체제 신구 조문 대비표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현행** | **개정안** | **비고** |
| **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**  1. 이용목적  가. ~라. (생략)  마. <신설>  2. 신용정보의 종류  가.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  나. 신용거래정보  ①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  ②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라. 신용능력정보  1) 개인의 직업∙재산∙채무∙소득의  총액 및 납세 실적, 그밖에 이와  유사한 정보  2)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. 공공기록정보 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  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바. 가명정보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🡪 링크걸기 | **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**  1. 이용목적  가. ~라. (현행과 같음)  마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. 신용정보의 종류  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(식별정보)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국적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번호•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대표자 성명 등  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(신용거래정보)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(가계)당좌거래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,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(신용판단정보)  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, 대위변제, 그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- 명의도용, 보험사기, 위조•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-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. 신용정보주체의 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 정보 (신용능력정보)  - 개인의 직업∙재산∙채무∙소득의  총액 및 납세 실적, 그밖에 이와  유사한 정보  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 마.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(공공기록정보) 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바. 가명정보  해당 사항 없음  (가명정보 이용시 공시 예정) | 이용목적 추가  신용정보의 종류 명확화 및 구체화  신용거래정보 개인/ 기업 동일 항목 통합 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판단정보에 포함하여 구체화  가명정보 미사용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|
| **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  1.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,신용정보회사(코리아크레딧뷰로㈜, NICE신용정보㈜,SCI평가정보 등), 소액결제업체(다날㈜, KG모빌리언스㈜)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(생략)  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. 식별정보  나. 신용거래정보 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  라. 신용능력정보  4. 제휴 업체 등 제3자제공  제휴업체 🡪 링크걸기  (생략)  5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위탁업체 🡪 링크걸기  (생략)  6.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가명정보 처리 현황 🡪 링크걸기 | **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  1. 제공대상  가.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  나.신용정보회사(코리아크레딧뷰로㈜, NICE신용정보㈜, SCI평가정보 등)  다. 소액결제업체(다날㈜, KG모빌리언스㈜) 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(현행과 같음)  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. 개인식별정보  나. 신용거래정보  다. 신용도판단정보  라. 신용능력정보  마.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4. 제휴 업체 등 제3자제공  제휴업체 🡪 링크걸기  (현행과 같음)  5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위탁업체 🡪 링크걸기  (현행과 같음)  6.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해당 사항 없음  (가명정보 제3자 제공시 공시 예정) | 제공대상 가독성을 위해 분류 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추가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미사용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|
| **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  1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(생략) 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(생략) | **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  1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(현행과 같음) 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(현행과 같음) |  |
| **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**  1. 개인신용정보 이용∙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가.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나.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3년간 이용∙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 다. 개인신용정보 이용∙제공 현황을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 2.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 3. 연락중지 청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4.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5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다만,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 6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집중기관∙신용정보회사∙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.  7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가.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,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나.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8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 **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**  1. 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 본인정보 열람 현황 조회하기 🡪 링크 걸기  2. 개인신용정보 이용•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,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(단, 은행이 내부경영관리목적,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)  본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하기 🡪 링크 걸기  3. 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4. 개인신용정보 제공•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 5. 연락중지 청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연락중지청구시스템(Do Not Call) 바로가기 🡪 링크 걸기  6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,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 7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 삭제 되기전 개인신용정보의 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 요청할 수 있습니다.  8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집중기관∙신용정보회사  ∙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9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가.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,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나.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10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11. 권리행사 방법  가.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신청서 🡪 링크 걸기  나. 전화 접수 : 1599-0722  다. 인터넷 접수 : 이메일 보내기 🡪 링크 걸기  라. 서면 접수 : 당저축은행 영업점 |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전면개정  신설  신설(방법 구체화) |
| **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**  (생략) | **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**  (현행과 같음) |  |
| **신용정보 관리·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**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(생략)  담당자  소속 : 준법감시본부  성명 : 황동욱 부장/ 한정희 팀장  전화 : 031-8015-9225  이메일 : [dwhwang@pepperbank.kr](mailto:dwhwang@pepperbank.kr) /paulhan@pepperbank,kr | **신용정보 관리·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**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(현행과 같음)  신용정보관리 담당자  소속 : 준법감시본부  성명 : 한정희 리더/ 안지애 과장  전화 : 031-8015-9225  이메일 :  [paulhan@pepperbank.kr](mailto:paulhan@pepperbank.kr) /jaan@pepperbank,kr | 담당자 변경 |